

인천지방법원 2024. 4. 23 선고 2023가단2816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

담당변호사 이선숙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지화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2024. 4. 2.

판 결 선 고 2024. 4. 23.

## 주 문

1. 제주 서귀포시 C 임야 2480㎡ 중 331/2480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3. 3. 27.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제주 서귀포시 C 임야 2480㎡ 중 331/248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3. 3. 29. 접수 제1254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.

○ 원고는 2022. 7. 27. D에게 39,300,000원을 변제기 2032. 7. 27.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
○ 원고는 그 후 D가 위 차용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차전13220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,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. 5. 22. ‘D는 원고에게 38,564,339원 및 그중 36,867,815원에 대하여 2023. 5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’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23. 6. 9. 확정되었다.

○ D는 2023. 3. 27.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이유로 주문 제2항 기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나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피고와 D 사이의 위 지분에 관한 2023. 3. 27.자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D와 주문 제1항 기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D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이전인 2021.경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황미정